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28.(목) 09:00 / 12. 28.(목) 석간 배포 2023. 12. 27.(수) 17:00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024년 1월 1일 본격 시행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 대상으로 우선 시행
- 동물용의약품 허가 확대,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축·수산물 생산·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24.1.) →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하였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하여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1.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이해
2.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현황
3. 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등록현황 검색 방법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책임자	과 장	문귀임 (043-719-3851)
		담당자	사무관	장문익 (043-719-3853)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책임자	과 장	하종수 (044-201-2971)
		담당자	사무관	이미순 (044-201-2978)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윤용식 (044-200-5808)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0년 지켜온 국민안심, 100년 뒤에갈 안심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이해

□ (동물용의약품 PLS) 국내 축수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그 기준으로 관리하고, 이외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 0.01mg/kg 적용 ('24. 1. 1. 전면 시행)

* PLS: 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 전	**PLS 도입 후**
설정	해당 기준 적용	해당 기준 적용
미설정	순차적용 ① CODEX ② 유사축종 최저기준 ③ 항균제 0.01 mg/kg	**일률기준(0.01mg/kg) 적용** **(단,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는 불검출)**

✓ **(1단계)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에 우선 도입('24.1.1. 시행)「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21.6.29.)**

✓ (2단계) 우선 도입 이외의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
(사용허가 및 기준설정 충분히 확대한 후 관계부처 협의하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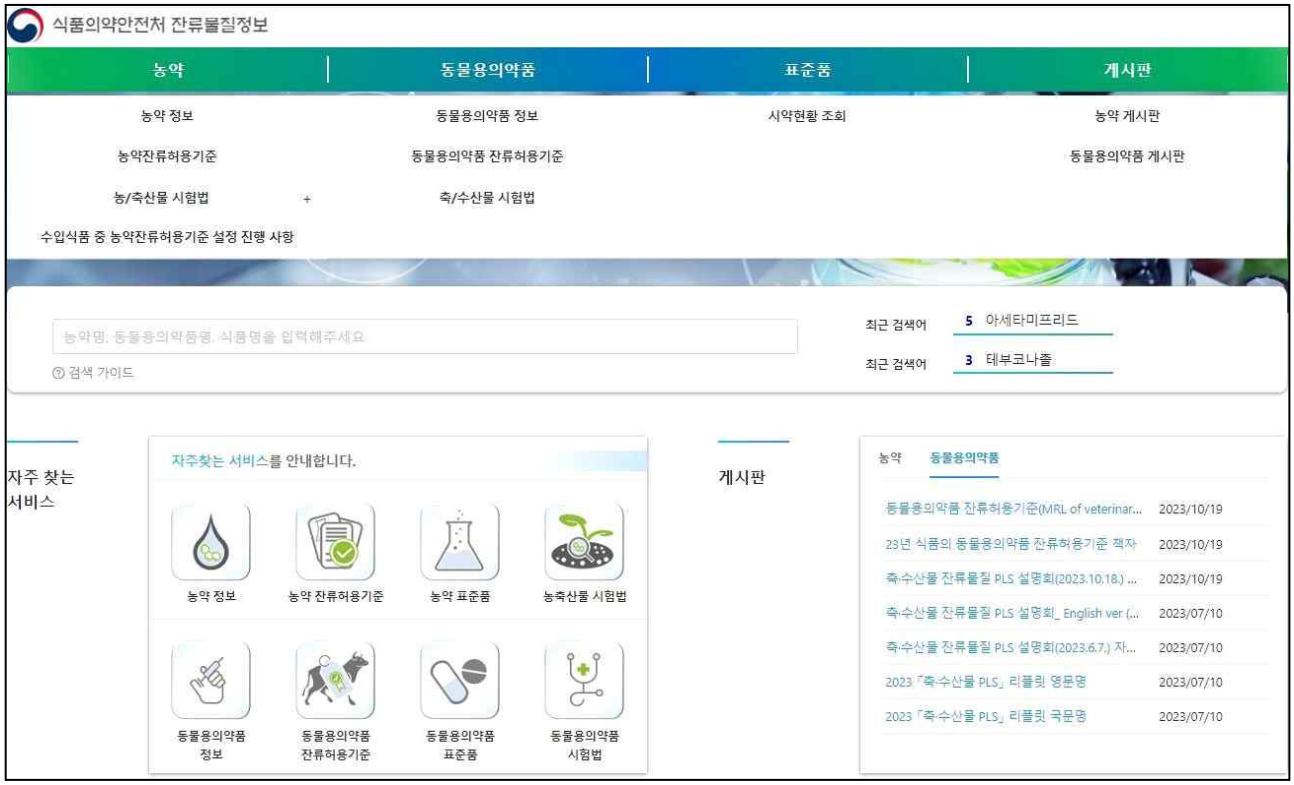
붙임2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현황

□ 국내 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용도 현황

구 분	동물용의약품		
	분류	식품 (품목)	기준 (건)
축산물	207종(항균제85, 구충제27, 살충제21, 성장보조제9, 진정제6, 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13, 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4, 항원충제22, 항히스타민제2, 지사제3, 기타15)	50	2,540
수산물	52종(항균제41, 구충제5, 살충제3, 진정제1, 항원충제1, 기타1)	3	72
벌꿀	10종(항균제4, 구충제1, 살충제5)	1	10
	총 합	**54**	**2,622**

붙임3 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등록현황 검색 방법

□ (식약처) 잔류물질정보(https://residue.foodsafetykorea.go.kr)



□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https://medi.qia.go.kr)



□ (해수부) 수산용의약품 관리시스템(https://www.nfqs.go.kr/apms/index.ad)

